

4.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5,449호 1997. 12. 13.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당해 지구안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그 대상을 확대하여 당해 지구 거주자 및 다른 지구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대하여는 일반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의한 인 · 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동조중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와 농지의보전 및편리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를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의 지정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가”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또는 신고나”를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나”로 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한”을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으로 하며, “사용검사필증을”을 “사용승인서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를 “임대주택법 제14조”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은 다음 각조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타인에게 전매(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⑦ 당해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등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에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이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동조 제38조의3의 규정을 각각 준용 한다.

제15조 후@중 “건축사법 제4조제3항”을 “건축법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중 “제10조제5항 내지 제7항 전@”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방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동조 제 38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1조의 별칙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6항·제7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부 칙 -

이 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호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 규정은 2월 1일부터 시행한다